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2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박 정·송옥주·민병덕

임오경 · 강유정 · 어기구

소병훈 · 장경태 · 김현정

김병기 • 문금주 • 윤후덕

안태준 의원(13인)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 마.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종사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8조).
- 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16조).
-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 2. "자치위원회"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내에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활동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

- 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 어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1. 도서 또는 벽지
 - 2. 인구 또는 면적이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지리적 여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 2.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 3. 자치계획의 수립
- 4.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 동장과의 협의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 6.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 7.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자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읍 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읍 면 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의 교직원
 -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직 원
 - ② 자치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제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회원 중 50명이내의 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 제9조(주민자치회의 규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제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자치위원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첨을 거쳐 구성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 모집에 신청한 자치회원
 -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 이 추천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 원을 포함한다)
 -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될 예정인 사람
 - ③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특정 성별·연령대 ·직업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자치위 원회구성관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7일이내에 위원의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자치위원 명단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본다.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4. 직무태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 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 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을 둘 수있다.
 -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간사 및 사무국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간사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참여하는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 제17조에 따른 자치계획
- 3.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4.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 5. 읍 면 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
- 6. 그 밖에 주민자치, 지역현안 등에 관한 사항
- ③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 출석한 자치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주민총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주민총회에 참석한 자치회원은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 자치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① 자치위원회는 자치회원의 주민총회 참여 촉진과 주민총회의 원 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총회 안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치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⑧ 주민자치회는 규약에 따라 주민총회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총회의 개최,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여 매년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읍 면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5. 그 밖에 주민 자치 및 주민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치계획을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읍·면·동 주민의 복리 증진

- 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예산기구를 두는 경우 자치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치회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5호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자료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읍·면·동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주민자치협의체)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에 따라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